

붙임1.

학교장 확인서 (전국 대회 참가 신청용)

■ 대회명: 2026 타임폴리오with라미드관광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2026.10.20. ~ 10.21.)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종목명	골프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초) 20일		
학교 담당자 (담임, 담당체 육선생님)	성 명			종별	남 , 여 (초)		
	연락처 (개인 또는 교실연락처)			적용 학년도 (기간)	2026학년도 ('26.3.1. ~ '27.2.28.)		
순	선수이름 ()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순	이름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1		/20		11		/20	
2		/20		12		/20	
3		/20		13		/20	
4		/20		14		/20	
5		/20		15		/20	
6		/20		16		/20	
7		/20		17		/20	
8		/20		18		/20	
9		/20		19		/20	
10		/20		20		/20	

[작성방법]

-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본 대회 포함하여 총 사용 누적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기입
예) 현재까지 사용한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총합이 10일인 경우 ⇨ 표기: (초) 10/20
-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확인은 **학교장의 법적 의무사항** 이므로 확인 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실시, ※ **확인 표시**는 "v"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 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 허용
 ※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초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하고,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학기(년)는(은) 최저학력제 미적용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위와 같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사용 현황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학교명			학년 성별	학년	남 / 여
선수정보	성 명		보호자	성 명 :	
	연락처			관 계 :	
				연락처 :	
적용대회	대회명	2026 타임폴리오with라미드관광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대회일	2026.10.20 ~ 10.21.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경기) 참가 제한

처분결과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	제한기간과 대회기간 중복 유무	처분일	중복 일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유, 무에 ○할것)	유/무	년 월 일	() 일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유, 무에 ○할것)	유/무		
• 8호(전학)	12개월 (유, 무에 ○할것)	유/무		
• 9호(퇴학)	○ 퇴학 사유가, (유, 무에 ○할것) 1)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년 2)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 퇴학의 경우 동 기간 선수등록 제한 병행	유/무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 ※ 처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무”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 ※ 처분 받은 이력이 있으나,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무”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 ※ 처분 받은 이력이 있고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표기)
- *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을 고려해 참가 여부 결정
- ※ 서약서 제출 후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종료일 내에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재작성 후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 제출

상기와 같이 본인은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양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서약서 제출시점과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동안 대회(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며, 향후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해당실적 삭제와 부정선수로 판단 시 내려지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서명)

확인자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붙임 3.**참가자 안전 서약서****□ 체육 행사 주최사의 안전사항 및 책임 범위**

- ① 체육 행사 주최사(이하 주최사)는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안전요원 배치, 응급차량 및 의료요원 운영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와 의료·구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②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한 보험(공제)의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기관명: 스포케어)

구분	기간	보장금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주최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대물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
치료비	주최사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타인(참가자 등)에게 발생한 상해(경기 중 포함)에 대한 치료비	1백만원

※ 본 보험은 주최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주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참가자 개인의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 등 참가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주최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주최사는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천재지변, 기상 악화, 안전사고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회를 중단·취소하거나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서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주최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의 안전사항 및 동의

- ① 참가자는 대회 참가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가하여야 합니다.
- ② 경기 중 어지럼증, 통증,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진행요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료요원의 판단에 따라 병원 이송될 수 있습니다.
- ③ 대회 중 참가자가 의식 상실·실신 등으로 명시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요원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응급조치 시, 참가자의 질병 등에 따라 처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상 특이사항 등 주최사가 인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최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⑤ 참가자의 질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주최사가 현장에서 합리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주최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참가자는 상기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서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상기 주최사의 안전사항 및 책임 범위, 참가자의 안전사항을 이해했습니다.
- 참가자 본인은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이상 발생 시 의료요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참가신청/환불 등 대회운영 정책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 참가자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직접 내용 확인 및 서명 필수

년 월 일

참가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인)

(만 19세 미만의 경우)